

심사보고서

2024. 6. 11.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378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5. 30. 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

나. 상정의결

-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4. 6. 11.)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경제국장 : 정찬식)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고금리 예금상품에 예치하도록 명시함(안 제7조)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및 기금 예치현황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보고 의무화(안 제9조)
- 심의위원회 활동내역 관리 의무화(안 제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4. 5. 3. ~ 2024. 5.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본 안건은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추가하고, 기금운용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²⁾을 의결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 있음.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공금예금계좌 개설 및 운영, △통합기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규정 신설,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심의위 설치 및 운영의 내실화 등의 개선안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안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는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고금리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할 의무를 명시한 것임. 우리구는 2024년 5월 기준 입출금

1) 「부패방지권익위법」 (2023.6.22.시행)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2)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2023.10.23.의결)

(문제점) △통합기금 자금관리 사각지대 발생, △비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손실, △긴급한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부실,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부적정

(개선안) △공금예금계좌 개설·운영, 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규정 신설,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내실화

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를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개설한 상태이므로 해당 권고사항은 이미 준수하고 있으며, 최근 4개년 강남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다음과 같은 규모로 운용 중임.

-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정기예금, 보통예금, 공금예금 등의 금융상품에 예치되어 있으며, 각 금융상품의 금리는 낮지 않은 편이어서 권고사항에 맞게 이미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³⁾ 여유자금은 운용 및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⁴⁾ 금고의 유희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바람직한 규정으로 보임.
- 관리책임부서에서 이미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법 조치의 적용으로 인하여 변동될 사항은 없다고 보임. 다만,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주시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을 탐색하고 상황에 부합하는 대안을 적시에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안 제9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제2항제5호는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이며, 같은 항 제8항은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이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등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보고할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이 부실해지는 위험에 대하여 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임. 같은 조 제9항은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이 매년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

3)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7호(2023. 7. 28. 시행)

‘기금의 관리·운용 > 기금여유자금 관리’ 참조(p.56).

기금여유자금 관리

- 장기성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치단체 금고에 정기예금, CD 등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
- 단기성 여유자금은 요구불예금, 기업자유예금, 기타 단기성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

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안전부 훈령 제266호(2023. 1. 1. 시행)

제36조(재정자금의 통합운용) ④ 통합지출관은 유희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운용기록부를 비치하여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 가용자금의 규모와 가용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할 것을 의무로 정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우리 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인 위원을 포함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이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심의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통합계정에의 예탁 등), 제6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11조(회의록), 제14조(관계법규의 적용)의 개정규정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표현의 명확성을 위하여 일부 용어의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임.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은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기금 운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지방재정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져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운용조례”를 “운용 조례”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아니하는”을 각각 “않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7조 중 “설치하여”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두되”를 “두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⑧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제11조제2항제2호 중 “직·성명”을 “직위·성명”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관계법규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통합계정에의 예탁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및 <u>운용조례</u>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 설치목적 달성에 위반되지 <u>아니하는</u>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p> <p>②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는 해당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위반되지 <u>아니하는</u>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5조(통합계정에의 예탁 등) ① ----- ----- ----- ----- <u>운용 조례</u> ----- ----- ----- <u>않는</u> ----- ----- -----.</p> <p>② ----- ----- ----- <u>않는</u>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u>아니할</u> 수 있다.</p>	<p>제6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 ----- ----- ----- ----- ----- ----- ----- ----- ----- ----- ----- ----- <u>않을</u> -----.</p>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9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③ ~ ⑥ (생략)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신설>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

--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
-----.

제9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 두고 -----
-----.

⑧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11조(회의록) ① (생략)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생략)
 2. 출석위원 직·성명
 3.·4. (생략)

제14조(관계법규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 사항 등

제11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직위·성명
 - 3.·4. (현행과 같음)

제14조(관계법규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 기획예산과 행정8급 이정원(02-3423-5474)